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창양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이전 시 적용되는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하고 기술 특성과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해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며, 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해 기술평가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공공연 보유기술의 이전(안 제26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)

- 1) 공공연 기술이전 시 적용되는 통상실시 원칙 등 제약을 폐지하고, 공공연이 기술 특성,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양도, 통상실시, 전용 실시 등 기술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
- 2) 공공연 보유기술에 대한 균등한 이용 기회 보장을 위해 기술이전 신청 접수 시 기술의 제목과 개요 등을 15일 이상 공지하고, 다른 신청자가 있는 경우 기술의 이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이용자를 결정

나. 기술평가기관 지정기준(안 제32조 제1항)

- 1) 기술평가 활성화 및 신규 평가기관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평가기관 지정 시 필요한 전문가 인력요건 완화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12. 30. ~ 2023. 2. 8.) 결과, 특기할
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일부개정령안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 제4항 중 “일반인”을 “기업 등”으로 하고, “통상(通常)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(專用)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.”를 “양도하거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내에서 사업화할 목적으로 기술을 이용하려는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.”로 하며,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6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공공연구기관은 제4항에 따라 기술을 양도하거나 전용(專用)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때에는 사전에 기술진흥원 또는 해당 공공연구기관이 지정한 홈페이지에 해당 기술의 제목, 용도 및 요지 등을 15일 이상 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기술의 공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.

- ⑥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공지한 기간 내에 다른 기업 등이 동일 기술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업 등이 제출한 기술의 이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기술의 이용자를 정할 수 있다.
-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관하여 통상(通常)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이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제3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전문가 “3명”을 “2명”으로 하고, 나목의 전문가 “7명”을 “3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) ①항 ~ ③항 (생략)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귀속된 기술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(通常)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(專用)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. 1.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 2. 제9조제3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기술의 이전·사업화에 관한 정보가 기술진흥원에 등록된 날부터 1년(신속한 기술이전·사업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) 이내에 통상의 실시	제26조(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) ①항 ~ ③항 (현행과 같음)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귀속된 기술을 기업 등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내에서 사업화할 목적으로 기술을 이용하려는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. 1. ~ 3. <삭 제>

현행	개정안
<u>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</u> 3.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<신 설>	⑤ 공공연구기관은 제4항에 따라 기술을 양도하거나 전용(專用)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때에는 사전에 기술진흥원 또는 해당 공공연구기관이 지정한 홈페이지에 해당 기술의 제목, 용도 및 요지 등을 15일 이상 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기술의 공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. ⑥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공지한 기간 내에 다른 기업 등이 동일 기술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업 등이 제출한 기술의 이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기술의 이용자를 정할 수 있다.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
<신 설>	
<신 설>	

현행	개정안
	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관하여 통상(通常)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이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제32조(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)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“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. 1. 다음 각 목의 전문가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. 기술거래사,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(이하 이 조에서 “기술평가사업”이라 한다)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가 3명 이상 나. 기술평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7명 이상	제32조(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)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“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. 1. 다음 각 목의 전문가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. 기술거래사,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(이하 이 조에서 “기술평가사업”이라 한다)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가 2명 이상 나. 기술평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3명 이상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	
연 락 처	(044) 203 - 4543